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 상속순위 규정 등 〉
■ 김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887호)

2024. 9.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미지급된 보험급여의 수급권 상속순위 규정(안 제81조제3항) ..	3
2. 보험급여 청구에 관한 사업주의 자료제공 의무 규정(안 제116조제2항 및 제129조)	8
3.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관련 사업장 조사에 당사자 및 대리인의 참여권 보장 등(안 제117조제3항, 제4항 및 제127조) ·	14

I. 제안경위

2024년 6월 25일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6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미지급된 보험급여의 수급권 상속과 관련하여 유족급여의 수급권 상속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와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자녀들에게 미지급된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되지 아니한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령이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다른 유족에게 미지급된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준용의 범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므로 준용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하고,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증명하여야 함. 그런데 산업재해 발생 시 유족이나 피해노동자가 그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측이 보유한 정보를 입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사측에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어 유족 등이 산업재해의 인과관계 주장

-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현행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험급여 지급결정,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등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사업장 등에 대해 조사할 수 있음. 그런데 사업장 등의 조사에 재해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이 없어 사업주가 재해노동자나 그 대리인의 현장조사 참여를 방해하는 실정이므로 현행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미지급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유족급여가 같이 수급자격이 상속될 수 있도록 준용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사업주에게 보험급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시 재해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3항·제116조제2항 후단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미지급된 보험급여의 수급권 상속순위 규정(안 제81조제3항)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유족 순위의 결정에 관하여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급여의 수급권자 순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81조제3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① · ② (생략) <u><신설></u>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1항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유족 순위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수급권자”로 본다.</u> 부칙 제2조(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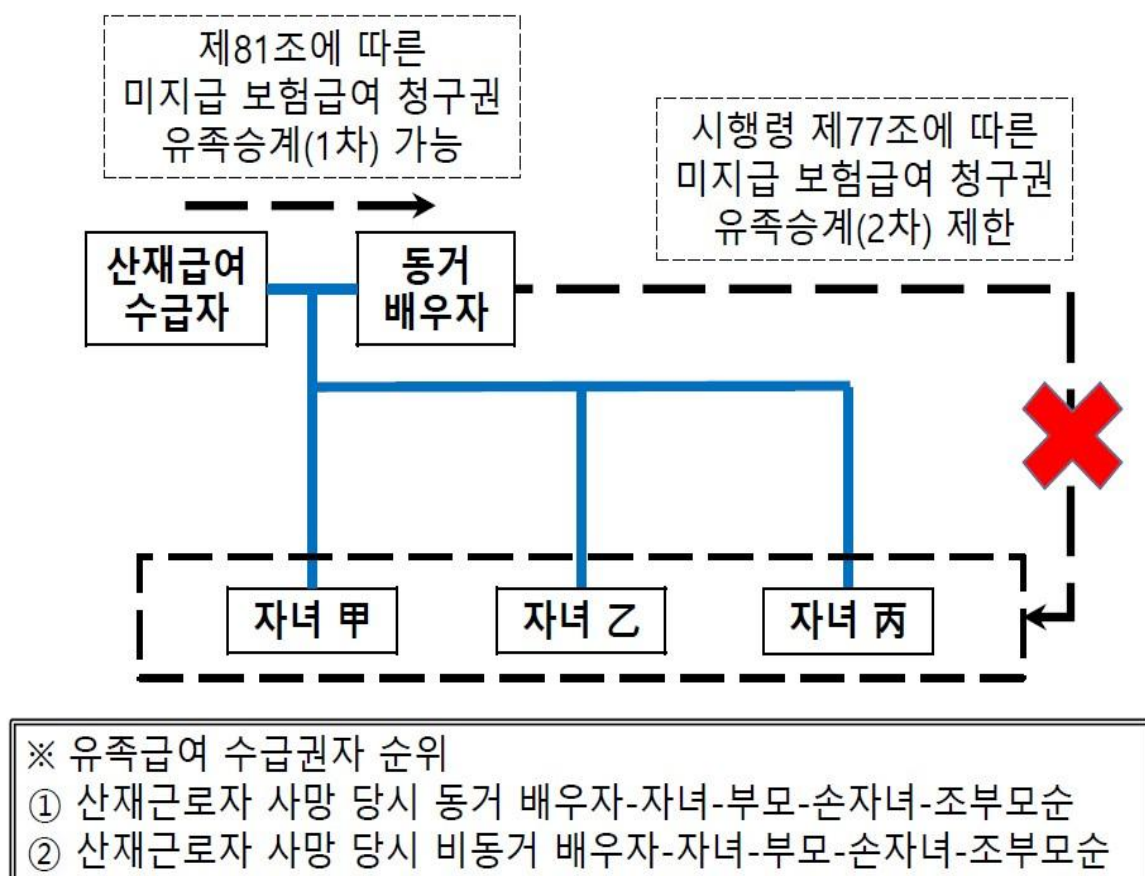
나. 검토의견

현행법에 따르면, 산재급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가 잔존한 상태에서 해당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즉, 미지급 보험급여가 발생한 경우 그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보험급여가 지급되는데,¹⁾ 여기서 ‘유족(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²⁾에 따라 유족급여의 수급권자 중 선순위자로 결정된다고 볼 것임.

- 1)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①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에 따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 등) 법 제81조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에 관하여는 법 제65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① 제57조제5항·제62조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른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사람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② 제1항의 경우 부모는 양부모(養父母)를 선순위로, 실부모(實父母)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③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는 미지급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결정에 관하여 유족급여의 수급권 승계에 관한 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3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아 미지급 보험급여에 대한 청구권이 1차적으로 유족에게 승계된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서는 청구권의 승계가 추가로 인정되기 곤란함.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권의 유족간 승계 제한>



정하면 그 지정에 따른다.

미지급 보험급여의 유족간 추가 승계에 관하여 하급심에서는 ①산재 급여청구권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민법」상 상속을 통해 유족의 청구권 승계를 인정하는 판례와 ②「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미지급 보험급여의 유족간 추가적인 승계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 1차적으로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된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산재급여청구권은 소멸된 것으로 보는 판례가 각각 제시되고 있는바,³⁾ 법적 분쟁도 야기되고 있다고 보임.

개정안은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 결정에 관하여 산재급여 중 유족급여청구권의 유족간 승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함으로써 유족의 산재급여수급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위와 같은 법률 해석의 분쟁도 종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것임.

3) 서울행정법원 2022. 1. 12. 선고 2021구단53583

…한편 시행령 제77조는 산재보험법 제81조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수급권자의 결정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는바,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에 관한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 제2항, 제4항은 준용하면서,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한 산재보험법 제65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고 있다. …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법 제65조 제3항을 준용하지 않음으로써 그 보험급여 수급권을 소멸시키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감사원 2023. 7. 6. 심사결정, 2022-심사-1989

…제65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어 수급권의 순위가 이전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배우자가 사망함에 따라 수급권이 소멸된 것이 명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이 사건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소멸되었다고 본 것은 타당하다.…”

서울행정법원 2024. 6. 11. 선고 2023구단61786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 근로자가 사망한 이후 산재보험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가 후순위 유족에게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제65조 제3항을 준용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다시 재산권의 상속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의 규정에 따라 그 선순위 유족의 상속인에게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동 개정안은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권의 유족간 승계를 인정함으로써 산재급여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법적 규율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의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볼 것임.

고용노동부는 수급권자와 유족 관계가 아닌 자가 산재급여수급권을 승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수급권자’로 규정한 안 제 81조제3항 후단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보완의견을 제시하였음.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유족급여 수급권자의 범위를 넘어 수급권 승계자의 범위가 확대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단서 규정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4)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은 사망한 산재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속되어야 하는데, 개정 규정에 따르면 수급권자의 친족관계에 따른 유족, 즉 사망한 산재근로자와는 유족 관계가 아닌 자가 산재근로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보험급여 청구에 관한 사업주의 자료제공 의무 규정(안 제116조제2항 및 제129조)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급여 수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자료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안 제116조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29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① (생략)	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 -----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 절차 및

③ 사업주의 행방불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u>증명이 불가능하면 그 증명을</u> 생략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129조(과태료)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4. (생 략) ④ (생 략)	<u>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③ ----- ----- ---<u>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u>--- -----<u>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u>-----. ④ (현행과 같음) 제129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제1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의 증명 요구 또는 자료의 제공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u>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근로자가 산재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여 근로자가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하나, 재해 발생 당시의 근무 환경 등 업무상 재해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자료는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등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정보의 편재성으로 인해 실질적인 근로자의 산재급여 청구가 제한될 소지가 있음.

현행법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보험급여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가 보험급여 청구를 위해 일정한 증명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등 사업주의 조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⁵⁾ 보험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사업장이나 의료기관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⁶⁾

-
- 5) 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①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한다.
②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의 행방불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증명이 불가능하면 그 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는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무제공 내용, 노무대가 및 시간에 관한 자료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제91조의15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플랫폼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6) 제117조(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①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과 보험사무대행기관 또는 제91조의15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단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주의 조력에 관한 규정의 경우 조력의 내용과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있고, 그 거부에 대한 제재조치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주가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의 산재급여 청구는 실질적으로 제한된다고 볼 것임.

개정안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효과적으로 산재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업주로 하여금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재해근로자의 보험급여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것임.

다만, ①공공부조의 성격을 갖거나 사적부조에 해당하는 다른 법률⁷⁾에서는 보험가입자가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절차를 조력하지 않은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⁸⁾ ②현행법상 근로복지

제118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등) ①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그 진료에 관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제1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19조(진찰 요구)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이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7)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어선원재해보험법 등

8) 단,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등에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일정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두고 사업주는 이를 적극 협력하도록 규정하면서 근로자의 요구에 대해 사업주가 위반할 때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례가 있음.

공단의 재해조사 시 사업주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고용노동부는 안 제129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①현행 법상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 판정 등을 위한 재해조사 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업장 출입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⁹⁾ ②과태료 부과 대상이

<관련 법령 및 내용>

법령명	조 항	내 용	위반시 처벌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500만원이하 과태료
남녀고용 평등법	제18조 (출산전후휴가에 대한지원)	④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관계 서류의 작성·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00만원이하 과태료
고용보험법	제16조 (이직의확인)	②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위하여 종전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300만원이하 과태료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7조(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①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과 보험사무대행기관 또는 제91조의15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9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17조 또는 제118조에 따른 공단의 소속 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되는 사업주의 조력 행위는 사인간의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①현행 사업주 조력 의무의 내용에 관련 자료 제공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¹⁰⁾ ②자료제공 절차 및 방법은 보험급여 신청인과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 ③현행법상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¹¹⁾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함.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②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

11)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판정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불응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보험급여 청구권자에 대한 조력사항에 대해서까지 벌칙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임.

3.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관련 사업장 조사에 당사자 및 대리인의 참여권 보장 등(안 제117조제3항, 제4항 및 제127조)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심사청구의 심리·결정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실시하는 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되, 참여자의 비밀누설 등을 제한하고(안 제117조제3항 및 제4항),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27조제4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7조(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①·② (생략) <u><신설></u>	제117조(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공단은 당사자(유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을 참여시켜야 한다.</u>
<u><신설></u>	<u>④ 제1항에 따른 조사업무에</u>

제127조(벌칙) ① ~ ③ (생략) ④ <u>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u>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설></u> <u><신설></u>	<u>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와 조사에 참여한 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127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1. <u>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u> 2. <u>제1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u>
---	--

나. 검토의견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및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

인이 근로자의 질환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에 참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¹²⁾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업무처리규정」(내규)은 ①반복적인 신체부담 업무로 근골격계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②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로서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대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③유해인자, 화학물질에 의해 질병이 발생한 경우로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조사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를 신청인, 보험가입자 또는 그들의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들의 참석 요구가 있으면 이들을 현장 확인조사에 참석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¹³⁾

개정안은 현행법령상 역학조사(작업장의 유해요인과 근로자의 질환의 상관관계)에 한정되어 있는 관계인들의 참석에 관한 사항을 보험급여 지급 등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일체로 확장

12)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역학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환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 대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요구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역학조사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3조(역학조사에의 참석) ① 법 제141조제1항 후단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질병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요양급여 및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역학조사에 한한다)을 말한다.

13) 「요양업무처리규정」 제4조(재해조사) ⑨ 소속기관장은 제8항에 따라 현장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 및 보험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문서, 전화 또는 전자적 방법(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조사 일시·장소 등을 미리 알리고, 동 조사에 참석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등의 참석 요구가 있으면 현장 확인조사에 참석시켜야 하고, 제8항제1호 본문에 따른 현장 확인조사에 참석하지 못한 때에는 현장 확인조사 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고, 근로복지공단에게 당사자 및 그 대리인을 재해조사에 참석시킬 법률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보험급여 지급 등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과정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은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 및 그 대리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당사자’의 범위는 명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보험급여에 관한 구체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¹⁴⁾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는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그 필요에 의해 현장을 통해 사건의 경위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절차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재해자·대리인의 참여로 공정한 조사가 어려워지고 조사기간 지연 등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조사 내용의 정확성 및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제기함.

1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역학조사 참여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 규정하고 있음.